

##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과 법제도적 과제

Study on Views and Legislative tasks of Economic Community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최홍동\*  
Cui, Hong-Dong

### 목 차

- I. 서론
- II.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 III.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과 장애요인
- IV.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과 제도적 과제
- V. 결론

### 국문초록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는 하나의 단일 시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역경제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내무역의 자유화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하에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과 잠재력을 자랑하고 역내 무역의존도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수준을 넘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육박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EU, NA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또는 '아세안'이라고 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고 기능적 협력단계에 머물러 있다. 동북아는 세계 주요 경제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제도적 경제협력조직 혹은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유일한 공백지대이다. 이제 동북아 국가들은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통합의 기회

논문접수일 : 2009. 3. 31.

심사완료일 : 2009. 4. 30.

제재확정일 : 2009. 5. 12.

\* 박사수료 ·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를 잘 활용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유럽, 미주 지역과 함께 동북아도 '열린 지역주의'의 자세로 이 지역에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국, 남·북한, 일본, 러시아와 봉говор을 모두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조직 또는 경제공동체를 수립하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우선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가 아직까지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들은 서로 손을 잡고 아세안+3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2008년 12월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로 3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앞으로 3국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나아가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적극적인 촉진작용을 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제도적 협력기초가 있지만 기능적 협력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의 구축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침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경제협력조직, 즉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또는 급선무이다. 지금부터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준비하여야 하고 특히 법적 측면에서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의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제어 : 지역주의, 지역화, 지역경제공동체, 한·중·일 경제협력, 한·중·일 경제공동체

## I. 서 론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주요 경제지역으로서 FTA 형태의 다자간 경제통합체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 있고 또한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로서 3국 협력이 동북아경제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 또는 제도적 경제협력조직이 하나도 없다. 또한 3국 협력은 EU, NAFTA, ASEAN, APEC 보다 상대적으로 뒤에 정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능적 협력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EU와 NAFTA처럼 제도적 협력기제를 설립하여야 3국간 협력 침체를 해결할 수 있고 3국간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제도적 협력기제는 3국 경제 협력의 침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중·일 3국은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통합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유럽, 미주 지역과 함께 한·중·일 3국도 '열린 지역주의'의 자세로 이 지역에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중·일 정상회의 기제를 계기로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 또는 급선무이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뒷받침이 가장 긴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공동체를 정리하고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요인을 분석하며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망에 관한 법·제도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 II.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세계화와 지역화의 발전에 따라 세계 각국은 모두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으로써 자체의 경제를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EU, NAFTA 등 의 출범과 지역주의의 심화 등 국제경제 및 정치적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는 역내에서의 경제협력, 나아가서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에 속하고 경제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 내의 각국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져온 기회와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하여 모두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경제공동체의 구축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협력의 전제수준, 지역경제실력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며, EU, NAFTA, ASEAN 등과 경쟁할 수 있기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경제공동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 1. 지역협력

#### 1) 지역협력의 개념

지역, 지역화와 지역주의는 지역협력을 연구할 때 3개의 핵심 개념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광범위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역(region),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정의하여야 한다.

지역이란 거시지역, 즉 국민국가 영역과 지구 혹은 국제체계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을 뜻하고<sup>1)</sup>. 본 논문의 지역은 인접국가로 구성된 것이다. 지역화는 지리적 분포에 기초하여 동일지역 혹은 인접지역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긴밀한 교류의 지역적 집중화 현상을 지칭한다.<sup>2)</sup> 지역주의란 같은 지역 내의 각종 행위체<sup>3)</sup>가 공동이익에 기초하여 지역협력을 진행하는 모든 사상과 실천 활동의 총칭이다.<sup>4)</sup>

전반적으로 말하면 지역주의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기능적 영역에 국가의 의식적인 정치협력이자, 지역 내 국가간의 협력이 형성하는 사상과 이론기초이자, 지역통합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지역화는 지역주의의 기초에 지역적 경제교류를 통해 형성하는 지역경제협력의 집중화 현상이며 지역경제통합과 상호대체가 가능한 개념인 반면, 지역주의는 지역화를 기점과 물질기초로, 경제정책의 협조나 조정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과정이며 그 최고의 단계가 정치적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의 관계

지역협력은 주로 지역적 범위에서 자국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주권국가간의 교섭과 협상의 과정으로 인식되고<sup>5)</sup>. 또한 경제나 정치·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도 있다. 지역통합은 지역협력과 달리, 일반적으로 종합적이고 지역협력은 일반적으로 종합적일 수 있고 전문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통합은 지역협력과 관련하고, 지역협력을 기초로 하여 지역협력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협력의 통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통합은 경제통합, 정치통합, 사회통합 등이 있지만 냉전 종식 후에 평화와 발전은 국가관계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분야에서 우선 경제협력을 비롯한 기능적 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각국 상호경쟁의 중점은 정치·군사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으로 향하고 본국 경제발전의 촉진, 종합국력의 강화와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이미 각국 공동의 기본정책이 된다. 동시에 모든 국가들이 본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든 후에 유럽과 같은 지역경제통합을 향한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

1) 정용화 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식마당. 2006. p.13.

2) 문돈.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 「한국정치연구」. 제 16집 제2호. 2007.1. p.168 참조.

3) 행위체는 여기에 정부, 정부간 조직, 비정부조직,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을 가리킨다.

4) 耶協峰. 「新地區主義與亞太地區結構變動」. 北京大學校 出版社. 2003. p.37.

5) Björn Hettne. "Beyond the New Regionalism." New Political Economy(Forthcoming issue). p.2.

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주로 지역경제통합을 연구하고자 한다.

## 2.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 1)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념

지역경제공동체란 일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지역경제권(*regional economic sphere*)을 형성하여 역내의 국가들간에 관세 등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경제공동체를 일컫는 것으로, 경제통합, 경제블록 또는 무역블록, 지역협력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sup>6)</sup> 여기서는 지역경제공동체는 지역경제통합의 뜻과 같고 지역 내의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협력체고 광의 지역경제공동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역경제협력체는 지역협력체의 하나 유형이며 지역협력체는 지역적 국제이므로 지역협력체 또는 지역적 국제조직을 국제법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적으로부터 살펴보면 국제조직은 지역적 국제조직과 세계국제조직이 있다. 지역적 국제조직(*reg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또는 지역협력체는 같거나 인접하는 지역의 국가가 공동이익과 발전,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수호를 위하여 지역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설기구이다.<sup>7)</sup> 지역적 국제조직은 세계적 국제조직과 만찬가지로 종합적일 수 있고 전문적일 수도 있으며 세계국제조직과 비교하여 지역적 국제조직은 국부적이나 더 작은 국제조직이다. 하지만 그 기능과 활동영역으로부터 보면 지역적 국제조직은 정치적이나 경제적 조직에 속할 수 있다. 세계적 국제조직의 회원국 및 조직 활동은 세계 범위에 보편주의를 구현하며 단, 지역적 국제조직의 회원국 및 조직 활동은 어느 지역을 중점으로 지역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sup>8)</sup>

지역경제협력체 또는 지역경제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역내 국가들간의 국제법적 합의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고 설립되는 것이다. 냉전 종식 후, 경제통합과 세계다극화의 경향에 따라 지역적 국제조직<sup>9)</sup>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EU, NAFTA, APEC, ASEAN은 지역적 국제조직의 전형적인 예이

6)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p.867.

7) 王亞平, 「國際法原理」, 人民法院出版社, 2005, p.456.

8) 梁西, 「國際組織法」, 武漢大學出版社, 1983, pp.229-230.

9) 지역적 국제조직은 지역조직의 뜻과 같고, 그 정의에 관하여 이론적으로는 다르다. 지역조직은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s*)이라 불릴 경우도 있고 지역기구, 지역협력체와 지역공동체라고 불릴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지역조직은 지역 내 국가 간에 체결된 지역협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기구이다.

다.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지역적 조직은 ASEAN이다. 통합정도가 가장 높은 조직은 EU이며 조직형식이 느슨한 것은 APEC이다.

## 2) 지역경제공동체의 유형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무역자유화와 경제관계의 정도에 따라 경제통합의 발전 형태는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② 관세동맹(custom union),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경제동맹(economic union), ⑤ 완전한 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등 5 단계로 분류된다. 물론 이러한 5가지 개념은 따로따로 경제통합의 수준과 범위를 반영하는 것이며 ①에서 ⑤로 경제통합의 수준은 높아지고, 역내 국가 간의 결속도과 역외국가에 대한 배타성은 더욱 강하다. 자유무역지대는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이며 그 대표는 NAFTA와 ASEAN이다. 경제동맹 수준에 이른 것은 EU이며 심지어 EU는 완전한 경제통합에 매진하고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은 정부의 참여 및 역할의 범위에 따라 공동체의 운영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법적 제도적 기관을 구비한 제도적인 경제통합(Institutional Economic Integration)과 그러한 공동체기관의 개입없이 시장기능에 의해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능적인 경제통합(Functional Economic Integration)으로 나누어진다.<sup>10)</sup> 하지만 APEC는 기능적 경제통합일 수도 있고 제도적 경제통합 일수도 있다. 제도적 경제통합은 일반적으로 공동의 지역협정을 기초로 상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며 일반적으로 국가권리의 양도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유형의 제도적 협력'이라고 불린다. 그 대표적 사례는 EU, NAFTA, ASEAN이다.

지역주의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 각국은 지역경제협력이 해당 지역경제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잠차 인지하도록 하고 지역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접의 국가들은 공동의 경제이익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대화·협력하여 지역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경제협력체 또는 지역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지역경제협력체 또는 지역경제공동체가 점차 형성해졌다. 대표적인 지역경제협력체 또는 지역경제공동체는 EU, NAFTA, APEC, ASEAN 등 있다. EU는 통합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정치, 경제공동체이다. 하지만 공동의 경제이익과 전략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EU이외의 지역통합 시도는 대개가 자유무역 협정 정도에 머물러 있다.

10) 최승환, 전계서, p.867 참조.

### III.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과 장애요인

#### 1.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

한·중·일 3국은 다양한 분야에 경제협력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 회의에서 서명된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은 세계금융위기 극복 3국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였고 분야별 구체적 협력 사업은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에 명기되었다. 이 기초에 3국은 아세안+3, 3국 정상회의를 통해 3국 FTA를 촉진하고 있고 금융과 에너지 분야에 협력하고 있지만 3국간에 제도적 협력기제가 형성되지 못한다. 제도는 경제협력국의 권리의무의 실현을 보장하는 구속적 행위규칙이다. 완비하고, 합리적, 실용적 제도는 협력의 목표를 실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3국 경제협력은 실질적 진전을 얻으려면 제도적 협력 틀을 설립하여야 한다.

##### 1)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한 3국 협력현황

한·중·일 3국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은 주로 ASEAN+3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 형성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3국 협력을 추진하였다. 1999년 형성되고 2000년 정례화된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한·중·일 3국이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협력은 제도적 협정이 하나도 없고 아세안+3를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은 1999년 열린 제1차 정상회의부터 여러 성과를 얻고 이에 비추어 2002 '한·중·일 FTA 연구', 2003년 '한·중·일 협력증진에 관한 공동선언', 2004년 '3국 정상선언' 이행촉진을 위한 '행동전략'과 3국 협력 '실적보고서', 2007년 제8차 3국 정상회의에서 '3국간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sup>11)</sup>이 채택되었다.

###### 가. 아세안과 3국의 FTA

중국의 朱鎔基 총리는 2001년 10월 아세안 주요국을 방문하면서 아세안과 중국 간 '10+1 자유무역지대'를 2011년까지 창설하고자 제의하였다. 중국은 2002년 11월 아세안

11) 이 '행동계획'에서는 여러 분야 협력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고 3국 협력에 관한 '진전보고서'는 매년 각 분야의 진전에 대해 심의하며 3국은 2~3년마다 번갈아 '행동기획'을 제정한다.

과 FTA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04년 FTA 상품합의와 분쟁해결기제협의에 도달하며 2005년 7월 중국과 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상품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아세안과 2005년 12월 FTA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 6월 1일 상품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07년 11월 21일 서비스협정에 서명하고 FTA 투자협정이 협상중이다. 일본은 아세안과 2002년 FTA에 대해 협상하기 시작하고 2012년 발효를 목표로 2008년부터 일본과 아세안 FTA 정부간 협상을 벌이되,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개별 FTA 협의에 따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이하 JAFTA) 추진이 일단락된 후 아세안 전체와 FTA(이하 AJCEP)를 체결하는 이중 방식을 채택하였다. 현재 한·중·일과 아세안은 모두 따로 FTA체결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진행하고 있다. 한국—아세안 FTA, 중국—아세안 FTA와 일본—아세안 FTA는 설립될 때 한·중·일 FTA 설립기제가 빨리 완벽해질 수 있고 3국 FTA의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와 아세안의 관계가 밀접하고 서로 촉진한다.

#### 나.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한 3국 금융협력

1998년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어서 1999년 4월 첫 재무장관회의가 열렸다. 이것은 아세안+3 재정금융협력기제가 초보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상징한다.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sup>12)</sup>와 아시아 본드마켓 이니셔티브(Asia Bond Market Initiative: ABMI)<sup>13)</sup>를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아세안+3회의에서 개별화폐교환을 주인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sup>14)</sup> 한·일은 2002년 3월 28일, 한·중은 같은 해 6월 24일 통화스와프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양자 간 계약을 통한 상호자금지원 체계(CMI 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후 현행 자금지원체계에 역내 경제 감시기능을 제도적으로 결합한 선진적 금융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지난 2007년 5월에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인 CMI를 다자간 계약으로 전환하는 CMI 다자화 기본방향에 합의하였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총 규모 800억불로, 아세안과 한·중·일 간 분담 비율은 각각 20% : 80%이다. 2009년 2월

12) CMI는 쌍무적 통화스와프협정으로 스왑 상대국간 일정금액을 약정하였다가 위기 시에 그 금액만큼 자국화폐를 맡기고 달러 또는 상대국 화폐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었다. 또한 1997년 9월 위기 발생 초기에 일본이 제의하였던 아시아통화기금(AMF)안 보다는 초보적 형태의 협력체계이다.

13) 아세안+3은 2003년 8월 아세안 본드마켓 이니셔티브(ABMI)를 출범시켰다.

14) 「동북아와 한반도의 경제통합」,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8.2, p.138.

22일 열린 아세안+3 특별재무장관회의에서는 아시아통화기금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을 기존 800불에서 1200억불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지난 5월 3일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지난 2월 22일 아세안+3 특별재무장관회의에서 CMI 다자화 총규모를 1200억불로 확대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논의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완료하였다.<sup>15)</sup>

#### 다.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한 3국 에너지 협력

동북아 지역 내의 관련 국가는 이미 다른 방식을 통해 시도해봐 왔다. 한국은 2001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동북아 에너지협력 국제심포지엄'에서 동북아 6국 정부차원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6)</sup> 일본은 2002년 9월 아세안+3회의에서 응급에너지 교류네트워크의 설치, 석유비축협력의 가속화, 천연가스의 이용, 에너지절약, 새로운 에너지기술개발 등의 추진을 제의하였다.<sup>17)</sup>

2003년 3월 아세안+3 에너지 당국은 아시아 에너지워크그룹을 설립하고 같은 해 한·중·일 3국 지도자가 발표한 「3국 협력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에 3국이 에너지협력의 확대 및 지역과 세계의 에너지안전의 공동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기초로 2004년 6월 21일 한·중·일 3국은 중국 청도에서 열린 아시아협력대화 제3차 외무부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에너지협력의 「청도구상」<sup>18)</sup>을 통과하였고<sup>19)</sup> 각료들은 같은 해 9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에너지각료회의에서 공동의 석유비축과 에너지절약의 설립을 호소하였다.

#### 2)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3국 협력

2008년 12월 13일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별도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sup>20)</sup>가 처음이다. 3국 정상들은 역내에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에 이르렀고 제2차 정상회의는 올해 중국에서, 제3차는 2010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밖에 단독적인 3국 외무장관회의와 고위급회의<sup>21)</sup> 및 기타 메커니즘 등이 있고 제1차 외무장관회의는

15) 아시아경제 뉴스종합 금융 은행. 2009.5.3.

16) 「동북아와 한반도의 경제통합」.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8.2. p.77.

17) 劉飛龍, 谷樹忠. "中國石油安全及其保障機制初探". 「자원과학」, 2006년 제12기, p.33.

18) 「청도구상」에는 에너지안전은 국제사회가 공동 직면하는 문제이고 솔직한 대화와 상호 유익한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협력은 지역과 국제협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어야 하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시아협력 대화국은 상호존중, 평등 및 상호이익의 원칙에 의거하여 에너지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아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안정의 에너지보장을 얻는 것을 승낙하였다.

19) "亞洲協力對話第3次外長會議는 「청도구상」을 통과하였음". 「人民日報」, 2004年6月23日.

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목적은 3국 협력을 촉진하고 3국 대화기제를 확실히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제2차는 일본에서 열렸다. 제3차는 올해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3국 외무장관회의가 열리는 목적은 외무장관들이 정책대화를 전개하고 자유롭게 3자 협력추진을 토론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 정상들은 2008년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담은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3국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등을 채택하였다.<sup>22)</sup> 또한 3국 정상회의는 3국간 FTA 공동연구의 심화 및 투자협정 체결·교섭의 가속화, 외교장관회의 및 차관보회의 경제적 개최, 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사이버 사무국'을 해 개설 등에도 공감대가 이루어진다.

### 3) 한·중·일 3국에 있어서 FTA의 추진현황

한·중·일 FTA 논의와 관련하여 한·일 FTA 논의와 한·중 FTA 논의도 있다. 한·중·일 FTA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한·일 FTA과 한·중 FTA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일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200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년 11월 6차례 협상 후 2005년부터 한·일 양국 FTA 협상을 중단되었으나 최근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지난해 12월 4일 서월에서 개최되었다. 한·중 FTA의 경우, 한·중 양국은 2004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의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하고,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007년 3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가 개최되고 2007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2007년 7월 제2차 회의에서 상품분야 보고서 초안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6차 회의가 개최된다.

3국간 FTA체결에 관련하여 중국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일본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아직까지 민간수준의 공동연구에 머물러 있다. 또한 한국은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FTA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한일 양국 FTA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 불구하고 한·일 FTA나 한·중 FTA를 먼저 추진하느냐 아니면 한·중·일 FTA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선 한·중

21) 3국 고위급회의 목적은 지역정세와 국제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프로젝트의 진전에 대해 평가하며 3국 협력의 미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것이다.

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3/200812130044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3/2008121300443.html)

· 일 3국 협력을 촉진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실질적 수단은 한·중·일 FTA의 체결이다.

3국 FTA 구상은 중국의 朱鎔基 총리가 지난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2003년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들이 '한·중·일 협력증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성명하였고 이 '공동선언'은 3국 FTA 구상을 3국 정부 간의 실행 가능성 연구시기에 접어들이었다. 한·중·일 3국 정부 간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어 경제무역왕래가 날로 밀접해지고 있으며 3국은 FTA에 대한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3국 FTA는 아직 연구·토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 4) 한·중·일 3국 금융협력<sup>23)</sup>의 추진현황

'동북아개발은행'(NEADB) 구상은 1991년 9월 한국 전 총리 南德佑와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주임 馬洪이 제출되었다. 2003년 10월 중국 천진에서 열린 PEEC(태평양경제협력이사회) 내부회의에서는 '동북아은행'의 준비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거의 20년 동안 동북아 경제포럼은 해당 지역금융협력에 대해 협의하여 논증함으로써 NEADB의 지역금융협력 건의를 제기하였다. 2008년 10월 29일 동북아 경제포럼에서 동북아 금융협력연구중심이 南開大學校에서 설립되었다.<sup>24)</sup> 2008년 12월 10일 한·중·일 3국 중앙은행은 3국 은행 총재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 공동성명서 (Joint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3국 중앙은행은 총재회의의 정례화가 역내 통화 및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첫 회의는 2009년에 중국인민은행이 개최할 예정이다.

2008년 12월 13일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과 경제문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한·중·한·일 간 양자 통화스왑의 거래규모 확대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한·중·일 3국에 자국통화의 스왑거래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이밖에 3국 정상은 역내 협력을 위해 CMI 다자화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G-20에서 합의된 5대 기본원칙에 따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부양에 힘쓰기로 합의한다.<sup>25)</sup>

23) 금융협력은 광의와 협의로 구성되고 협의의 금융협력은 화폐당국이 화폐와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쟁무협력이며 광의의 금융협력은 화폐, 금융의 운영과 발전, 금융위기의 관리, 서로 시장의 결합, 지급결산시스템의 설립, 금융체제의 전환 등 거시적, 미시적의 정체호조, 호혜호리, 상업적 조약 등을 가리킨다. 본 논문의 금융협력은 광의의 금융협력이다.

24) 남개 뉴스네트. 2008.10.29.

### 5) 한·중·일 3국 에너지의 추진현황

중국정부에서 제안된 한·중·일·미·인도 등 5국으로 구성된 제1차 에너지각료회의가 2006년 12월 북경에서, 제2차 에너지각료회의가 2008년 6월 7일 일본에서 열렸다. 2차 5국 에너지각료회의에는 에너지안전보장과 석유비축, 에너지절약과 구조다양화 등 의제를 토론하였다.<sup>26)</sup> 2008년 중국 국무원에서 허가된 「동북아지역진흥계획」에는 동북 아지역 에너지협력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동북아에너지협력은 각국의 공동노력을 통해 소기성과를 얻었다. 지역내 중·일 에너지 정책대화, 한·일 에너지 고위관리회의, 일·러 에너지대화기제 등 양자 에너지대화와 협력은 비교적으로 역동적이고 다자협력 기제도 시작하였다. 동북아지역 에너지협력에 대한 시도는 앞으로 한·중·일 제도적 에너지협력을 위하여 튼튼한 토대를 닦았다.

## 2. 한·중·일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최근에 한·중·일 3국의 협력분야는 계속 확대되고 경제와 투자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3국은 에너지협력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해 금융협력에 큰 진전을 얻었으며 서로 경제협력이 날마다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3국의 경제협력은 기능적 단계에 있고 3국 FTA의 체결, 금융위험문제, 에너지협력 등에 많은 장애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3국 경제협력의 추진현황과 현존의 협력기초에 앞으로 3국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중·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국가가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는 지났다. 미국은 동북아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공동체 또는 한·중·일 3국 FTA에 대해 계속 반대해온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빨리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발전과 심화에 따라 지방 정치단위나 경제단위의 국경을 초월한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25)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8 No.47, 2008. 12.15. 대외경제연구원 [www.kiep.go.kr](http://www.kiep.go.kr)

26) 李向平, 「東北亞區域經濟合作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p.187 참조.

세계화는 한·중·일 3국 협력이 이루어지고 3국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협력이 계속 확대된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경제구조의 높은 보완성 및 경제적 연관성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호 무역투자 관계로 볼 때, 경제협력의 가능성, 잠재력과 필요성은 매우 크다.

국제정치, 경제추세에 따라 3국간의 협력은 동북아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세계경제 및 금융상황과 관련한 심각한 도전에 대한 대처에도 매우 중요하다. 유럽지역의 EU, 북미지역의 NAFTA, 동남아 지역의 ASEAN은 지역 간 협정 또는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국가 측의 다자협력기제를 설립하지 않고 3국간의 협력 틀이 아무것도 없으며 각자 다른 지역의 국가와 양자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지만 3국간에 한·중 FTA, 한·일 FTA 또는 3국 FTA는 지금까지 하나도 형성되지 못한다.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한·중·일 3국이 G20, 즉 세계 주요 경제국가에 포함되면서 3국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또한 NAFTA와 유럽의 경제통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중·일 FTA를 체결하고 3국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지만 한·중·일 FTA 체결과 3국 경제공동체 형성의 전체는 3국간 경제협력이다.

## 2)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한·중·일 3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협력이 계속 확대되어 지리의 접근성, 문화의 동질성이 있고 경제구조의 보완성이 높으며 3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거대하지만 다양하게 현실하고 잠재한 제약요소로 인해 3국 경제협력이 EU, NAFTA, ASEAN, APEC보다 상대적으로 뒤에 차지하고 있고 경제통합의 가장 늦은 단계인 FTA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며 3국 경제공동체의 구축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는 3국간 협력의 제약요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러한 제약요소의 제거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장애이다. 한·중·일 3국은 경제발달국가 일본, 신흥공업화국가 한국, 개발도상국 중국으로 구성되고 3국간에 사회경제체제, 경제발전단계와 수준, 산업구조, 경제이익의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정도의 3국간의 협력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3국은 FTA 체결에 한·일 2국의 농수산품과 중국의 공업영역, 특히 자본과 기술 집약형 산업 개방문제가 있고 금융협력을 진일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일 2국은 에너지경쟁문제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3국은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기초로 NAFTA처럼 상호보완성을 이용하면서 적당하게 각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경제적

장애를 극복하며 협력의 제도적인 기초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치적 장애이다. 정치적인 상호신뢰는 국가 간 경제협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은 중·일간의 조어도 영토분쟁,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영토분쟁 및 해저자원분쟁,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문제와 배타적 경계수역 경계획정 분쟁, 한·중 배타적 경계수역문제, 대륙붕 경계획정문제 등 영토·영해 주권문제, 역사왜곡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문제 등 역사문제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분쟁 문제는 3국 관계발전과 정치적 상호신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복잡하여 밀접하고 항상 주권귀속문제, 국교정상화 문제 등과 관련되어 해결되기 어렵다.<sup>27)</sup> 또한 한·일은 미국과 따로 안전보장협정에 서명하고 가운데'일·미 방위협력지침'은 심지어 한반도와 중국 대만을 그 방위협력 방위에 넣었다. 이 행위는 중·일 관계발전에 엄격하게 소극적인 영향을 주고 동북아 정치적, 안전영역에의 상호신뢰를 엄격하게 해친다.

셋째, 제도적 협력시스템의 결여이다. 제도적인 협력조직은 없으면 각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국제사무에 대한 상호의존과 상호지지, 지역적 경제블록의 차별 무역정책에 대한 대처, 자체의 시장점유율의 유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은 모두 어렵다.<sup>28)</sup> 한·중·일 3국은 기능적인 협력단계에 머물러 있고 FTA 또는 경제공동체는 아직도 연구·토론 단계에 있고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중·일 3국간에는 지금까지 제도적 협력이나 어떠한 서면협의, EU와 NAFTA처럼 FTA 또는 협력조직이 아무것도 없고 정부 간의 무역·투자협력 틀의 지도와 상용한 조직기구의 제도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래, 중·일간, 한·중간에 발생한 농산품에 관한 무역마찰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국 정상회의를 기제로 하여 정부 간 협의를 체결하여 대화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3국의 협력에 제도적 기초와 보장을 제공하며, 그리하여 한·중·일 FTA의 체결 및 경제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한다.

넷째, 미국의 요소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세계 제1 경제대국, 무역대국과 자본대국 이자 한·중·일 3국 상품의 최종수출시장이자 아시아에 거대한 경제이익과 안전전략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 FTA의 체결, 3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안전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이 있다. 정치, 군사관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한·일과 군사동맹 국임을 통해 2국에 영향력을 가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한반도 통일문제와 대만문제 등 3국 가장 중요한 정치·안전문제는 모두 미국과 관련된다.<sup>29)</sup> 그러므로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처음 단계로 하는 3국 FTA는 체결될 때는 미국과의 관계와 이익을 적

27) 何志工, 安小平, 「東北亞區域合作邁向東亞共同體之路」, 時事出版社, 2008. 7. p. 231.

28) 楊忻, 滕召學, 「東北亞區域經濟合作應進一步加強」,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第20卷, 2005. p.59.

29) 陸建人, 「論東北亞經濟共同體」, 「當代亞太」, 第6期, 2005. p.51 參照.

당하게 감안하여야 한다.

## IV.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상과 제도적 과제

### 1.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개념

#### 1)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개념

동북아 공동체란 동북아를 형성하는 구성국가의 지리적 특수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경제제도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능·제도적 통합에 의해 동북아 차원의 공존공영을 위한 경제적인 통합관계와 정치적 공동체화, 그리고 다자간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역내 구성국가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범국가적인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동북아 공동체의 개념을 살펴보면 한·중·일 경제공동체란 한·중·일 3국의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경제구조의 보완성을 통해 경제사회제도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능·제도적 통합에 의해 3국의 공존공영과 공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 통합관계와 다자간의 경제협력체 구축을 통한 3국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범국가적인, 제도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3국 공동체와 다르다. EU는 EC를 기초로 발전하였고 유럽경제통합의 더욱 깊은 단계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공동체는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기초로 발전되는 깊은 단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전자로 전환하는 하나의 교량 또는 전자의 하나의 유형이며 전자를 실현하는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2) 한·중·일 경제공동체와 3국 경제협력의 관계

경제공동체는 일반적인 경제협력과 달리, 더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체이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한·중·일 경제협력과 다르지만 서로 보완하여 관련한다. 한편으로는 양자가 다르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제도화의 협정과 조직이고 명확한 목표와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있으며, 일상 사무를 담당하는 상설기구가 있고 회원국의 중

30) 신장칠. “동북아경제공동체 논의와 그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제38권, 2007. 10. p.126.

양정부에서 추진되며 구체적인 협정과 규칙 및 자금보장이 있다. 3국 경제협력은 비제도적, 기능적 협력이고 어느 특정한 영역 또는 항목을 둘러싸는 것이다. 경제공동체는 제도적 협정으로 회원국이 고정되고 회원국의 가입 또는 탈퇴가 모두 경제공동체 규정의 구속을 받다.<sup>31)</sup>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일 경제공동체가 3국 경제협력과 서로 보완하여 관련한다. 소극적 경제교류의 장벽의 제거를 넘어 공동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 경제협력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경제동맹은 경제공동체 혹은 단일시장(single market)라고 할 수 있으며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 경제통합 수준을 의미한다.<sup>32)</sup> 이 경제공동체 개념을 잘 살펴보면 경제공동체는 경제협력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그리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협력은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초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3)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3국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요구이자 시대의 요구와 역사적 호소이다. 한·중·일 3국은 세계에 중요한 국가이고 경제보완성이 높고 어떤 한 지역경제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드문 국가이다. 세계의 흐름에 대응하고 3국 경제협력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금융위기가 지금도 퍼지고 있으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더욱 드러난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지역경제공동체의 의식이 확산되었다. 미국 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08년 12월 10일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정례화되었고 그 후 '국제금융과 경제문제 공동 성명'<sup>33)</sup>이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금융안정과 경제위기의 예상, 대응과 방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3국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31) 陸建人, 전계논문, p.47 참조.

32) 이재민 외, 「동북아 지역공동체 인식 및 제도화의 과제」, 박사자료원, 2007, p.26.

33) 3국 정상들은 "국제금융과 경제문제 공동성"에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전세계 증가의 일련의 국제회의와 협력노력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고 3국이 "금융시장개혁을 주도하는 공동원칙행동계획"을 포함하는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수뇌회의선언"을 실행할 것을 확인하며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수뇌회의선언"과 "페루 APEC정상 세계경제선언"에 투자와 화물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승낙을 거듭 천명한다.

둘째,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분쟁, 정치적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흐름에 대응하고 3국 경제협력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국 경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3국 정부 간의 협력조직과 상설기구를 설치할 필요도 있으며 가능한 무역·투자영역에 대하여 협상하고 구체적인 실시세칙, 법률과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sup>34)</sup> 또한 한·중·일 3국간의 영토·영해 분쟁, 역사문제 등은 3국의 경제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3국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경제협력을 가속화하여 정부 간의 교류와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상호이해를 강화하면서 경제수단으로 정치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세계화와 지역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강화 경세에 따라 모든 국가는 지역경제협력체 또는 지역경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한·중·일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3국간 경제협력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고 3국 경제를 불리한 지위에 처하고 있다. EU, NAFTA 등의 출범과 지역주의의 심화 등 국제경제 및 정치적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는 3국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과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져온 기회와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하고 3국 각자의 잠재력, 효과 높은 기능을 발휘하고 경제협력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 2.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과 과제

EU와 ASEAN는 모두 몇십년간의 경제협력을 기초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감안하면 한·중·일 경제협력은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입구가 될 수 있고 3국 FTA는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들파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3국 FTA를 핵심으로 하고 3국 경제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금융 등의 협력을 우선 협력영역으로 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3국 FTA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의하고 동시에 에너지공동체와 금융공동체를 법제도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 1) 한·중·일 FTA의 체결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협정인 3국 FTA를 체결할 필

34) 李玉潭, 麾德良, “東北亞區域經濟合作新構想”, 「東北亞論壇」, 第4期, 2000. 11. p.8.

요가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최초의 별도 정상회의로, 향후 회담 정례화를 통해 한·중·일 FTA의 체결이 아세안+3과 한·중·일 정상회의 틀에 진행된다. 여기서는 한·중·일 FTA의 체결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일 3국간 최초의 정상회의 개최 및 정례화를 통해 3국 FTA의 체결에 관한 고정상담 메커니즘과 전문적인 연구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3국간 정상회의 개최 및 정례화는 3국 협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고정상담 메커니즘은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외교와 경제무역·투자, 3국 FTA의 실현방법, 형식 등 문제를 협상하고 3국의 경제무역교역과 협상중인 3국 투자협정을 촉진하며 그리하여 3국 FTA 체결을 가속하게 된다. 또한 3국 FTA가 체결되면 완비한 제도적 제약기제와 감독기구, 또한 3국간의 경제무역 분쟁과 마찰을 협상, 조정, 중재하는 분쟁해결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3국이 협정의 내용을 집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제도적 제약기제는 3국 협력목표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의 기초에 3국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안정한 정치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주로 정치적 분쟁과 역사문제 등 장애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 분쟁과 역사문제는 우선 고안되어야 한다. 정치적 분쟁은 정치관계의 개선, 정치적 상호신뢰의 구축을 통해 교류와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해결되고 역사문제는 집단적 기억과 민족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역사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역사문제를 더 속질하고 겸허하게 대하여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서명된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은 3국 FTA의 체결과 3국 경제 공동체의 구축을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3국 동반자 관계의 기초에 3국 정치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3국간의 정치적 분쟁과 역사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셋째, 한·중·일 정상회의와 고정 상담메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한·일 농수산품 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3국 FTA는 EU와 NAFTA의 성공경험을 참고하여 자체의 실제상황에 따라 아세안+3처럼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제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아세안, 중국—아세안과 일본—아세안은 모두 따로 FTA체결에 대하여 협의하였거나 협상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잘 살펴보면 중국과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것은 농수산물과 전자제품, 특히 농수산물이다. 중국의 민감한 영역은 주로 공업영역, 특히 자본 집약형 산업과 기술 집약형 산업이다. 3국은 필요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해 FTA 협상과정의 염려를 경감하고, 특별히 민감한 산업을 적당하게 제외하거나 해당 분야의 개방시간표를 지연하여 전환기한을 제공함으로써 FTA를 빠른 속도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sup>35)</sup> 그러므로 3국 FTA의 체결로 인해 이러한 민감한 부분

에 주는 손해를 경감하거나 상쇄하기 위하여 3국은 FTA를 협상할 때 각국이 모두 각자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사회보장조치, 보상방안, 지역발전정책, 분쟁해결체제 등을 포함하는 체제를 설립하여야 한다.<sup>36)</sup>

넷째, 3국 FTA 주요내용의 목표구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sup>37)</sup> 한·중·일 FTA는 단지 서비스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지적재산권보호, 노동환경보호,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EU나 NAFTA처럼의 지역무역협정을 가리킨다.

여기서 한·중·일 3국 FTA의 주요내용은 무역의 자유화와 원활화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서비스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활성화, 금융·화폐협력, 경쟁정책, 지적재산권보호, 정부조달, 합의에 따라 산업구조의 조정, 노동환경보호, 에너지협력, 교통물류 분야의 협력, 분쟁해결체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국은 경제발전수준과 산업체제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국의 실제상황에 따라 3국 FTA를 단계적,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목표의 제정과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새롭게 창조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일 3국은 한국과 일본의 민감한 농수산업, 중국의 민감한 철강, 석유화학공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영역에 대한 산업구조와 3국간 합의에 따라 협정에 담겨질 내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사회보장조치, 보상방안, 지역발전정책 등을 제정하며 비교이익이 분명하고 기술수준이 비슷하며 상대적으로 성숙한 산업영역에서 우선 협력체를 가능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 2) 한·중·일 금융 공동체의 구축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3국 금융협력시스템의 형성, 재정상 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고 3국 중앙은행의 정기적인 협상시스템을 통해 3국 개발은행의 설립에 도움이 되고 3국간의 금융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은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위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3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지난 2월 22일 태국에

35) 劉重力, 盛琪, "중일한 FTA 전략비교연구", 「東北亞論壇」 제17권 제1기, 2008.1, p. 60.

36) 상계논문, p. 60

37)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서 열린 아세안+3 특별재무장관회의<sup>38)</sup>는 ‘아시아경제 금융안정 행동계획’을 통과하였다. 지난 5월 3일 3국 재무장관은 계획하고 건립하고 있는 자기관리의 지역외화보유고의 출자지분에 대한 공감대<sup>39)</sup>를 형성하였다. 금융위기를 발생할 때는 외화보유고가 대차로 자금순환이 어려운 회원국에 자금도움을 제공한다. 소개에 따라 한·중·일 3국 재무장관회의에서 3국 재무장관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다자화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재의 상황에 3국이 거시경제정책조정과 3국 재정금융협력을 강화한다고 표명하였다. 이 기초에 앞으로 3국간 금융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3국 금융공동체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금융협력기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금융안정은 지역경제안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이다. 한·중·일 3국의 금융협력은 아세안+3 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CMI, ABMI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해 왔으나 아세안과 한·중·일 각국은 이미 통화스왑을 체결한 상태이다. 하지만 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기구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한다. 한·중·일 3국은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3국 정상회의, 중앙은행총재회의 등을 계속 강화하고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과 ‘아시아경제 금융안정 행동계획’을 기초로 쌍무적 통화스왑기제를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거나 금융위험을 효과적인 방비·해소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 통화스왑기제, 금융위기의 조기경보 기제, 3국 자금구조기제와 재무금융협력기제, 공동의 관리감독기제, 한·중·일 3국 중앙은행의 정기적 협상기제 등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기제의 형성은 동북아 금융협력연구중심을 통하여 한·중·일 3국간의 금융협력을 추진할 수 있고, 금융협력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책조치를 취함으로써 즉시 해결하게 되며 3국의 금융정책을 조정하며 3국의 경제금융안정과 경제발전에 매우 필요하다.

둘째, 3국정부간 화폐금융협력조정을 강화하고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 국제금융국장 회의, 2008년 제8차 3국 재무장관회의 후 창설된 3국간 거시경제·금융 협의체, 거시금융부문 정례학술세미나로 구성된 금융협력 협의체가 형성되었지만 3국의 화폐금융협력은 아직까지 통일한 금융통합 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3국간 화폐금융협력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른 편으로는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38) 아세안+3 특별재무장관회의는 아시아지역 화폐의 금융위기 대처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공동 외환 비축 규모를 원래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늘리기로 결정하였고, 한중일 3국이 80%의 출자액을 분담하고 아세안국가들이 20%를 부담하는 원칙은 계속 고수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을 감독관리하고 지역경제를 운행하도록 독립적인 지역경제 감독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아시아개발은행이 기초시설 건설과 무역용자 분야 지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강조하였다.

39) 자기관리의 지역외화보유고의 출자지분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모두 384억 달러, 한국은 192억 달러를 출자하고 따로 보유고총액의 32%, 32%, 16%를 차지하고 있다.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3국간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재원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투자재원인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치하여야 한다. 동북아 금융협력 연구중심은 NEADB의 설립을 목표로 NEADB 설립의 가능한 운영방안을 빨리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금융협력연구중심을 플랫폼으로 한·중·일 3국 관련 금융 전문가의 연구협력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북아 개발은행은 외환위기로부터의 조기 회복과 3국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3국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때는 3국간의 금융협력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3국간의 금융사장의 감독·관리기구, 공동협력과 협상토론의 정부 간 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아세안+3 재정금융협력기제, 한·중·일 3국 정상 회의, 동북아 금융협력연구중심을 기초로 3국 정부 간의 금융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여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통하여 3국 경제안정을 위하여 금융사장의 감독·관리기구, 공동협력과 협상토론의 정부 간 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 각국정부는 적극적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정보교류, 위험조기경보, 금융 감독관리, 위기응급조치 등 측면에 제도적인 조정기제가 형성 할 필요가 있다.<sup>40)</sup>

### 3) 한·중·일 에너지 공동체의 구축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석유의 소비대국과 수입대국인 한·중·일 3국은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분야에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일은 에너지공급다변화, 외국자원의 이용, 석유공급의 보증 등에 많은 이익충돌과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기초에 에너지협력의 영역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3국 에너지안전을 보장하며 3국의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국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3국 현존의 협력기제를 충분히 이용하고 3국 에너지협력의 자금조달기제, 조직 조정기제, 연구자문서비스기제, 환경평가기제 등 에너지협력기제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에너지시장의 혼들려 움직임의 거대한 충격을 받고, 중동의 석유에 심각하게 의존하며 지속 확대하고 있는 해상수송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으며 에너지 프리미엄의 차취를 겪게 된다. '유럽에너지현장'과 국제에너지기구의 형성을 참

40) 梁峰, 전계서, p.159.

고하여 적극적으로 3국의 에너지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에너지 안전의 전략목표, 원칙, 실현방법을 확정하고 한·중·일 3국 에너지현장과 에너지기구를 형성하여 3국 공동 석유비축, 응급반응 기제, 에너지협력포럼을 설립하고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의 동북아 에너지협력협상기구 및 정보공유네트워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최종으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의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법률적과 제도적 궤도에 옮긴다.

둘째,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의 동북아 석유·에너지협력시장화를 촉진하고 3국을 중심으로의 석유·에너지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계범위로 살펴보면 많은 석유수입국은 시장화를 통해 석유공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석유시장화는 석유수입국이 석유공급보장을 해결하는 기본방향이다. 동북아는 싱가포르 중계무역시장만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국제화석유시장인 동북아 석유시장을 설립하고 석유 간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아시아의 프리미엄을 제거하여야 한다.

셋째, 북미와 유럽의 에너지협력 경험을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모델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등 측면에 완벽한 법률, 선진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있다. 중국은 노동력과 석유가스탐사 등 측면에 부분기술이 있고 동시에 에너지생산대국이며 지금까지 한·일의 중요한 석탄 공급국이고 선진한 새로운 에너지와 에너지절약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한국도 에너지절약, 시장운영, 에너지비축 등 측면에 우세가 있다. 충분히 3국의 우세를 이용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협력영역을 석유·가스에서 전력, 석탄, 원자력, 재생자원 등 영역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동시에 에너지 절약,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3.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의의

동북아는 미국과 EU와 함께 세계경제에서 3대 성장축(growth pole)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현재 한·중·일 3국에서의 경제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역내 경제·무역의 상호의존도는 NAFTA의 수준을 넘어 EU에 육박하고 있지만 경제 통합의 가장 늦은 수준인 FTA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여 3국 경제의 통합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중·일 FTA의 체결이며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핵심과 선도이다. 한·중·일 FTA의 체결은 세계경제통합의 추세가 결정될 것뿐만 아니라 더욱 3국이 자연, 인문과 경제무역관계에 있는 밀접성이 요구된 것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기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기제, 3국 외무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 동북아 금융협력연구중심 등은 모두 한·중·일 3국 제도적 협력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초가 된다. 이러한 제도적 기초에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핵심으로 하는 한·중·일 FTA는 우선 체결되어야 하고, 러시아, 북한과 몽골로 확장하고 온 지역무역시장과 무역액의 확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으로迈进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은 영토·영해분쟁, 역사문제, 동맹관계의 재조명 문제 등 현실문제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사회체제, 정치제도, 경제이익 등 많은 측면에 갈등이 있지만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방애할 수 없고 이에 반해 경제적으로 상호 유리한 협력을 통해 3국간의 정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정부 간 협상 진행 중인 한·중·일 3국은 투자협정의 경우에 한·일, 한·중, 중·일 간 투자보장협정을 3국간으로 확대하여 투자보장자유화와 촉진에 중점을 둔 규정을 논의하고 있고 3국간 투자협정이 선 체결되면 투명한 제도적 환경 및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3국간 FTA 체결논의를 가속화하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일 FTA가 형성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국 경제공동체도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경제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초국가적 집행기구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초국가적 집행기구도 있어야 하고 3국이 부분 주권을 초국가적 집행기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같이 바라보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은 3국 제도적인 협력기초에 3국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3국 경기적인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강화하고 교섭력을 제고함으로써 우선 3국 초보적인 경제공동체로서의 FTA를 체결하고 3국 협력기제를 세우며 3국 경제 협력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하고 동시에 조건이 갖추어질 3국 에너지공동체, 금융공동체 등 전문적인 공동체를 설립하여 완비하면서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또한 앞으로 한·중·일 3국은 3국간의 조약체결, 협력기구의 설립, 기금설치, 정기적인 정상회의의 개최 등을 통해 경제적 공동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3국간 정치신뢰를 구축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V. 결 론

오랫동안 동북아 경제협력의 비전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인 FTA가 형성되지 못한다. 유럽경제와

통화연합의 실례를 보면 지역경제협력에 핵심국가간의 협력을 해당 지역경제협력의 과정을 지배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동북아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경제공동체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우선 형성되고, 나중에 여건이 되는 국가가 이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간 무역 및 투자 면에서는 실질적 경제교류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3국 경제협력체는 역내국가간 경제적 실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FTA를 지향하며,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원활화, 경제협력 및 정책 협력을 포함하는 진보된 FTA(FTA-plus)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상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3국 FTA를 핵심으로 한·중·일 경제협력의 주요 부문별의 에너지공동체, 금융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은 3국간 영토영해분쟁, 역사문제가 있고 경제발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층적 경합구조, 분업질서의 중첩, 수출품목 및 시장의 중복 등은 협력 구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인 FTA를 체결하지 못한다. 또한 3국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된 협력체가 없다.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침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경제협력조직, 즉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 또는 급선무가 된다.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난 12월 형성된 3국 정상회의가 3국 정부 간의 협력에 플랫폼과 제도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중·일 3국은 상호협력, 정부 간 상호교류와 상호대화를 강화함으로써 한·중·일 3국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다.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으로 한·중·일 3국은 경제관계를 긴밀화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안보적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상당히 유리하게 된다. 또한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그와 더불어 동북아 국가들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와 연대를 확산 심화시킴으로써 민족주의적 갈등 해소에 커다란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며 경제공동체를 통해 사회문화 공동체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반드시 모범적이고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영작·김기석 역음, 「21세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6.
- 김찬남,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1998.
- 김화섭,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모델」, 산업연구원, 1998.
- 동아출판사, 「東亞世界大百科事典」, 제19권, 1989.
- 송병해, 「경제통합론」, 법문사, 1994.
- 李靜, 「亞洲地圖冊」, 중국지도출판사, 2004.
- 이재민 외, 「동북아 지역공동체 인식 및 제도화의 과제」, 박산자료원, 2007.
- 李昌在 외,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 제주발전연구원·동아시아재단 공편, 「동북아 공동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정용화 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식마당, 2006.
- 진창수,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2008.
-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 「동북아와 한반도의 경제통합」,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8.2.
- 耿協峰, 「新地區主義與亞太地區結構變動」, 북경대학교 출판사, 2003.
- 何志工, 安小平, 「東北亞區域合作通向東亞共同體之路」, 時事出版社, 2008.
- 金熙德, 「中國的東北亞研究」, 世界知識出版社, 2001.
- 李向平, 「東北亞區域經濟合作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 李玉潭, 陳志恒 외, 「東北亞區域經濟發展與合作機制創新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6.
- 梁峰, 「東北亞區域經濟發展與合作」,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7.
- 梁西, 「國際組織法」, 武漢大學出版社, 1983.
- 慕亞平, 「國際法原理」, 人民法院出版社, 2005.
- 朴承憲 외, 「東北振興與東北亞區域經濟協力」, 延邊大學出版社, 2006.
- 朴鍵一, 朴光姬, 「中韓關係與東北亞經濟共同體」,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 논문

문돈,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 「한

- 『국정치연구』 제16집 제2호, 2007.1.
- 方峻錫, “한·중·일 경제공동체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학박사학위논문
- 배궁찬, “한·중·일 3국 협력의 전망과 과제: 일본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주요국제 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 10.
- 신장철, “동북아경제공동체 논의와 그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韓日經商論集」, 第38卷.
- 제성호, “東北亞 平和와 協力を 위한 한국의 國際法的 實踐課題”, 「저스티스」, 통권 제99호.
- 諸成鎬, “東北亞 經濟共同體 건결과 法·制度的 實踐課題”, 「저스티스」, 통권 제72호.
-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8 No.47, 2008.12.15. 대외경제연구원 [www.kiep.go.kr](http://www.kiep.go.kr)
- 李玉潭, 麾德良, “東北亞區域經濟合作新構想”, 「東北亞論壇」, 第4期, 2000.
- 劉重力, 盛璋, “중일한FTA 전략비교연구”, 「東北亞論壇」, 제17권 제1기, 2008.1
- 陸建人, “論東北亞經濟共同體”, 「當代亞太」, 第6期, 2005.
- 戚文海, “論東北亞區域經濟合作機制化”, 「東北亞論壇」, 第2期, 2003.
- 楊忻, 滕召學, “東北亞區域經濟合作應進一步加強”,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第20卷, 2005.
- Björn Hettne, “Beyond the New Regionalism.” *New Political Economy* (Forthcoming issue)
- Dearden, R.G. “Trade disputes and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Western Hemisphere Trade Integration: a Candian Latin American Dialogue*. Basingstoke: Macmillan. 1997. 한국개발연구원

[Abstract]

## Study on Views and Legislative tasks of Economic Community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Cui, Hong-Dong

*Ph. D. Candidate, Dept. of Law, Jeju National Univ.*

After the cold war, the whole world is moving forward a single market at high speed. Especially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liberalization of the regional trade are growing immensely. While Under the trend, the Northeast countries which have the world's highest economic growth rate and potential, exceed the level of NAFTA, are closing to EU, relatively lagging behind the EU, NAFTA, ASEAN, APEC and staying at functional cooperation. Until now as the world's main economic region, Northeast Asian region is the only one blank region without the institu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the free trade agreement. Now it is time to make good use of economic integration composed in the Northeast Asia for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hat's more, the building work of economic community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ill not wait any more. Northeast Asia, as an opened regionalism, ought to build an economic community being able to compare with Europe and the Americas. But there are no the conditions to build the Northeast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or economic community including China, South and North Korea, Japan, Russia and Mongolia. So the economic community among China,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be built at first.

Because the world financial crisis is still spreading, the leader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held three countries' Summit meeting hand in hand in December, 2008 by the ASEAN+3 Summit meeting. Three countries summit meeting makes their relations enter into a new phase, promotes actively the conclusion of three countries' FTA and even economic community's formation in the future. Three countries have

an institutional cooperation base, while are still staying the functional cooperation level. So South Korea, China and Japan recognized that building the economic community among three countries is an effective way to settle the stagnation of their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ummit meeting, strengthening th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in an effective way and building the economic community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re a priority or pressing need.

**Key words** : regionalism, regionalization, regional economic community, economic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economic community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